천안 신방 삼부르네상스 입주자모집공고

■ 견본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1600-0377)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한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 안내
- 천안 신방 삼부르네상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이버 견본주택(http://sambu-renaissance.co.kr)을 운영합니다.

■ 당첨자 서류접수 기간 및 정당계약 기간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마스크 미착용, 손소독제, 비접촉온도계 온도체크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온도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나는 유증상자는 견본주택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 대표전화(☎1600-0377)를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모든 상담원이 상담 중으로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0.04.17.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09.14.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천안시)은「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2항에 의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청약가점제도」가 적용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나머지 6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아파트의 해당 주택건설지역(천안시)은 수도권 외 광역시가 아닌 지역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로서「주택법」제64조 및「주택법시행령」제73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부터 전매가 가능합니다.(단, 향후 관계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분양권전매는 계약금10%를 완납한 이후 사업주체의 일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9.14.)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5항 및「천안시 고시」제2020-301호에 의거하여, 천안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2020.03.14.)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해외체류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경우는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단순 단기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변경)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기존)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변경)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적용 제한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ambu-renaissance.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8.02.09.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서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주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도「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열지구 및 그 외 지역 모두 주택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 되며 입주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권이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에도 공급계약 취소 등에 관한「주택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60%) 대출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가능여부 등으로 대출한도가 부족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에 당첨된 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자는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본 아파트의 임의 공급대상에 포함 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한국감정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 정	09월 24일(목)	09월 25일(금)	09월 28일(월)	10월 08일(목)	10월 20일(화) ~ 10월 22일(목)
방 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방문계약(10:00~16:00)
장 소	• 한국감정원 청약Home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장애인 및 만65세 고령자 등 인터넷취약자인 경우 견본주택 방문접수 가능 (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당사 견본주택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785-16번지

※ 견본주택의 당첨자 서류접수, 계약은 예약제로 운영되며, 당첨자분들은 방문시간을 지정하여 예약하지 않을 시 입장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동·호수 추첨 및 계약체결 일정은 당사 홈페이지(http://sambu-renaissance.co.kr)를 통해 안내 예정이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 특별/일반공급 및 예비 순번에 따라 서류접수 및 동·호수 추첨, 공급계약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동·호수 추첨 미참여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자의 경우 서류접수 기간 내 미접수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류접수기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당사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04.17.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천안시 주택과 - 39955호(2020.09.11.)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230-9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5층 8개동 총 830세대
[특별공급 349세대(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81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81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164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23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예정일 : 2023년 0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계		
민영 주택	20200001065	01	59.9828	59A	59.9828	21.9087	81.8915	**33.0875**	114.9790	33.6765	227	22	22	45	6	95	132	11
		02	59.9977	59B	59.9977	22.4920	82.4897	33.0958	115.5855	33.6849	289	28	28	57	8	121	168	13
		03	75.9828	75A	75.9828	22.5005	98.4833	41.9134	140.3967	42.6595	220	22	22	44	6	94	126	10
		04	84.9861	84A	84.9861	26.1305	111.1166	**46.8798**	157.9964	47.7143	94	9	9	18	3	39	55	4
	합 계										830	81	81	164	23	349	481	38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거 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 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 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함.
※ 세대별 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지적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단수 조정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함. 단,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단위:원/세대)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 세대수	동(라인)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계	1회	2회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계약시	계약후 30일이내	2021.03.20	2021.07.20	2021.11.20	2022.03.20	2022.07.20	2022.11.20	입주지정일
59A	227	101,102,103, 104(5호), 105동(4호) 106,108동 (1,2,5호)	1층	6	45,736,000	164,464,000	210,200,000	10,000,000	11,020,000	21,020,000	21,020,000	21,020,000	21,020,000	21,020,000	21,020,000	63,060,000
			2층	11	45,736,000	166,764,000	212,500,000	10,000,000	11,250,000	21,250,000	21,250,000	21,250,000	21,250,000	21,250,000	21,250,000	63,750,000
			3층	11	45,736,000	169,064,000	214,800,000	10,000,000	11,480,000	21,480,000	21,480,000	21,480,000	21,480,000	21,480,000	21,480,000	64,440,000
			4층	11	45,736,000	171,364,000	217,100,000	10,000,000	11,710,000	21,710,000	21,710,000	21,710,000	21,710,000	21,710,000	21,710,000	65,130,000
			5~10층	66	45,736,000	180,564,000	226,300,000	10,000,000	12,630,000	22,630,000	22,630,000	22,630,000	22,630,000	22,630,000	22,630,000	67,890,000
			11층~25층	122	45,736,000	187,564,000	233,300,000	10,000,000	13,330,000	23,330,000	23,330,000	23,330,000	23,330,000	23,330,000	23,330,000	69,990,000
59B	289	101,102,103, 104,106, 108동(3,4호), 105동 (3호)	1층	11	45,748,000	159,752,000	205,500,000	10,000,000	10,550,000	20,550,000	20,550,000	20,550,000	20,550,000	20,550,000	20,550,000	61,650,000
			2층	13	45,748,000	162,052,000	207,800,000	10,000,000	10,780,000	20,780,000	20,780,000	20,780,000	20,780,000	20,780,000	20,780,000	62,340,000
			3층	13	45,748,000	164,352,000	210,100,000	10,000,000	11,010,000	21,010,000	21,010,000	21,010,000	21,010,000	21,010,000	21,010,000	63,030,000
			4층	13	45,748,000	166,552,000	212,300,000	10,000,000	11,230,000	21,230,000	21,230,000	21,230,000	21,230,000	21,230,000	21,230,000	63,690,000
			5~10층	78	45,748,000	175,652,000	221,400,000	10,000,000	12,140,000	22,140,000	22,140,000	22,140,000	22,140,000	22,140,000	22,140,000	66,420,000
			11층~25층	161	45,748,000	182,352,000	228,100,000	10,000,000	12,810,000	22,810,000	22,810,000	22,810,000	22,810,000	22,810,000	22,810,000	68,430,000
75A	220	101,102,103, 104,105 (1,2호)	1층	4	57,936,000	204,964,000	262,900,000	10,000,000	16,290,000	26,290,000	26,290,000	26,290,000	26,290,000	26,290,000	26,290,000	78,870,000
			2층	10	57,936,000	207,764,000	265,700,000	10,000,000	16,570,000	26,570,000	26,570,000	26,570,000	26,570,000	26,570,000	26,570,000	79,710,000
			3층	10	57,936,000	210,664,000	268,600,000	10,000,000	16,860,000	26,860,000	26,860,000	26,860,000	26,860,000	26,860,000	26,860,000	80,580,000
			4층	10	57,936,000	213,564,000	271,500,000	10,000,000	17,150,000	27,150,000	27,150,000	27,150,000	27,150,000	27,150,000	27,150,000	81,450,000
			5~10층	60	57,936,000	225,164,000	283,100,000	10,000,000	18,310,000	28,310,000	28,310,000	28,310,000	28,310,000	28,310,000	28,310,000	84,930,000
			11층~25층	126	57,936,000	233,764,000	291,700,000	10,000,000	19,170,000	29,170,000	29,170,000	29,170,000	29,170,000	29,170,000	29,170,000	87,510,000
84A	94	107동 (1,2,3,4호)	2층	4	64,801,000	234,499,000	299,300,000	10,000,000	19,930,000	29,930,000	29,930,000	29,930,000	29,930,000	29,930,000	29,930,000	89,790,000
			3층	4	64,801,000	237,699,000	302,500,000	10,000,000	20,250,000	30,250,000	30,250,000	30,250,000	30,250,000	30,250,000	30,250,000	90,750,000
			4층	4	64,801,000	240,999,000	305,800,000	10,000,000	20,580,000	30,580,000	30,580,000	30,580,000	30,580,000	30,580,000	30,580,000	91,740,000
			5~10층	24	64,801,000	253,999,000	318,800,000	10,000,000	21,880,000	31,880,000	31,880,000	31,880,000	31,880,000	31,880,000	31,880,000	95,640,000
			11층~25층	58	64,801,000	263,699,000	328,500,000	10,000,000	22,850,000	32,850,000	32,850,000	32,850,000	32,850,000	32,850,000	32,850,000	98,550,00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납부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공급금액은 분양가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범위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니며,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상(청약 시 주택형)	59.9828	59.9977	75.9828	84.9861
약식표기 주택형	59A	59B	75A	84A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착오가 없도록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면적합산시 소수점5자리이하에 대해 반올림값이 적용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호별 구분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호수로 당첨자를 선정함.

■공통사항

- 상기공급금액은 분양가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통합)가 미 포함되어 있음.
- 상기공급금액에는 발코니확장설치비용은 미포함된 금액이며,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단, 계약체결일정은 추후별도 안내예정임)
- 상기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기타공용 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분양가격에는 각 주택형별 전용면적, 주거공용 면적 및 주차장, 기타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상가)은 상기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각 동별 라인별 최고층이상 이하오니 반드시 동·호수 배치를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람.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받아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수별로 구분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아파트인 경우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이상 분할하여 받으며(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50%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 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하여야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함.(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약정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영업일을 납부일로 함.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하고, 잔금은 입주전(세대열쇠 불출전)에 납부하여야함.
- 분양대금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합리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납부하여야함.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아파트대지면적(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제외)을 주택형별 전용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인허가 변경, 필지의합병 및 분할, 지적확정측량결과에 따라 대지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1%이내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변동에 대해서는 상호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 금액을 입주자가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합니다(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기준).
- 중도금 대출이 필요한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함.(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함.(미납시 연체료 부과됨)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한민국이외의 국적인자가 분양을 받을 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외국인 부동산취득(허가)신고를 하여야함.
- 본 아파트에 대한 청약신청자격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나이를 기준으로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7일)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Ⅱ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특별공급신청자격별·주택형별공급세대수

구분			59A	59B	75A	84A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등 (보훈처추천)	충남동부 보훈지청	6	8	6	2	22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국군복지단	5	6	5	2	18
	중소기업근로자	대전·충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5	6	5	2	18
	장애인	충청남도청	6	8	6	3	23
소계			22	28	22	9	8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22	28	22	9	81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우선공급(75%)	34	43	33	14	124
		일반공급(25%)	11	14	11	4	40
소계			45	57	44	18	16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6	8	6	3	23
합 계			95	121	94	39	349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2018.05.04.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특별공급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기준의 100%이하인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기준의 120%이하인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130%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자를 포함한다)합니다.

■특별공급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특별공급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횟수제한 제외)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함
무주택 요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체결불가,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제한] -기관추천/다자녀가구/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무주택세대주 요건 ※무주택 세대구성원 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자격 요건을 갖추어야함. -기관 추천특별공급(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제외)/신혼부부 특별공급/다자녀가구 특별공급신청자 ①청약예금: 해당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자 ②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 납입인정금액이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이상인 자 -노부모부양특별공급신청자

①청약예금: 해당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이상인 1순위 자
②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 납입인정금액이85㎡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예치금액 이상인1순위 자
③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가입하여6개월이경과하고,해당주택에신청가능한청약예금지역별,면적별예치금액이상인자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 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천안시/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시
전용면적85㎡이하	2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102㎡이하	3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135㎡이하	4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6조: 전용면적85㎡이하 공급세대수의10%이내): 81세대

•대상자:「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대상 해당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 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자는 제외 함)
※청약자격요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이상)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 제공자 제외
※추천기관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장애인: 충남도청(장애인복지과)
-장기복무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충남 동부보훈지청 보상과
-중소기업근로자: 대전·충남 지방 중소 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당첨자 선정방법

-기관 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합니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6조에 의거 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 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합니다.[미신청시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자만 신청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신청자중 선정되지 않은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추천 시「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조5항에 의거 해당 주택건설지역(천안시6개월 이상 거주자)에 거주하는 신청자를 우선순위로 추천합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이내): 81세대

•대상자:「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만 19세 미만의 직계자녀 3명(태아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6개월 이상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과거에 주택을 소유 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 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미만)이어야 함. 3명이상의 자녀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 자녀도 포함 됨.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0조제3항)

•당첨자 선정방법

-해당주택건설지역(천안시 6개월이상 거주)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 세대 발생시 천안시6개월미만 거주자 및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자녀수(1)	40	미성년자녀5명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자녀4명	35	
		미성년자녀3명	30	
영유아자녀수(2)	15	자녀중영유아3명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미만의 자녀
		자녀중영유아2명	10	
		자녀중영유아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가족	5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 이어야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산정
		5년이상~10년미만	15	
		1년이상~5년미만	10	
해당시·도거주기간(5)	15	10년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지역전체를 해당시.도로 본다.
		5년이상~10년미만	10	
		1년이상~5년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 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 함)
(3): 한 부모 가족의 경우 한 부모 가족증명서로 확인(3),(4):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53조를 적용
(4), (5):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6): 입주자저축가입확인서로 확인
※동점자 처리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41조: 전용면적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이내): 164세대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 신고일 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 이어야 함*)으로서「신혼부부주택특별공급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2018.12.11.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특례)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상 입양신고일이 적용 됨)등으로 확인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임신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하며 서류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소득기준: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 별 월평균 소득(4명 이상세대는 가구원 수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기준의12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130%이하)

•당첨자 선정방법
-2018.05.04.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 수 별 월평균 소득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120%이하)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 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 별 월평균 소득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소득이 있는 경우130%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 공급합니다.
①제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제2순위: 1순위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자→무자녀 또는 2018.12.11.전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2년을 경과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해당 주택 건설지역(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거주자
②미성년자녀(태아를 포함한다)수가 많은 자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분리 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 되어야 함.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된 경우만 해당
③미성년자녀(태아를 포함한다)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해당 주택 건설지역(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거주자
②미성년자녀(태아를 포함한다)수가 많은 자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 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 되어야 함.
*재혼배우자의 친자녀(전혼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된 경우만 해당
③미성년자녀(태아를 포함한다)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 기간개시일 전 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 하기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전에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지않거나, 불법낙태 또는 입주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 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기준

공급유형		구분	2019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 별 월평균 소득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우선공급 (기준소득,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이하	5,554,983원	6,226,342원	6,938,354원	7,594,083원	8,249,812원	8,905,541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	6,665,980원	7,471,610원	8,326,025원	9,112,900원	9,899,774원	10,686,649원
신혼부부일반공급 (상위소득,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5,554,984원 ~6,665,980원	6,226,343원 ~7,471,610원	6,938,355원 ~8,326,025원	7,594,084원 ~9,112,900원	8,249,813원 ~9,899,774원	8,905,542원 ~10,686,649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30%이하	6,665,981원 ~7,221,478원	7,471,611원 ~8,094,245원	8,326,026원 ~9,019,860원	9,112,901원 ~9,872,308원	9,899,775원 ~10,724,756원	10,686,650원 ~11,577,203원

-기준소득: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100%를 초과하지 않아야하며 ,부부 중1인 소득이 월평균소득기준 100%초과 시 일반공급25%(상위소득)[부부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120%초과~13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상위소득: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120%를 초과 하지 않아야 함.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8인 가구원 수 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1인당 평균소득(655,729)*(N-8)}※N→9인 이상 가구 원 수
※가구당 월 평균소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 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함).
※월 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 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하고, 사업자인경 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소득금액증명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 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 월 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 의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으로 산정.(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 수로인정)

•신혼부부 소득 증빙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전년도 휴직기간이 없는 경우: ①재직증명서 ②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①재직증명서(휴직 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매월 신고납부 대상자확인으로 발급)	①해당직장 ②세무서/해당직장
	신규취업자/금년도전직자	①재직증명서 ②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①,②해당직장
	전년도전직자	①재직증명서 ②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①,②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발급되지않는자 (학원강사,보육교사등)	①재직증명서②총급여액및근무기간이기재된근로계약서또는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①,②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①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사업자등록증	①세무서
	간이과세자중소득세미신고자	①간이 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 제출)	①세무서
	신규사업자	①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 및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②사업자등록증	①국민연금관리공단/세무서
	법인사업자	①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①세무서②등기소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①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②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①,②해당직장/세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①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①주민센터
비정규직근로자/일용직근로자		①계약기간 및 총 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 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상기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및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①해당직장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비사업자 확인각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비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46조: 공급세대 수의 3%이내): 23세대

•신청자격:「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도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 부양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

※배우자 분리 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소형.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동일순위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천안시6개월 이상거주)거주자가 우선함.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 가점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규칙」별표12호나목)'에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 될 경우, 당첨이 취소 될 수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구비서류(계약 체결 전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본인	•견본 주택비치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생략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본인	•견본주택에 비치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주택 공급신청용(본인발급용)
	○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시는 제출생략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 는운전면허증, 여권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 통장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발급 또는 주택청약서비스청약Home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www.applyhome.co.kr)[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제외]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바람)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포함하여'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4조제5항에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현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발급기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개년도 발급요망(주민센터 또는 민원24발급가능)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직계존속/비속	•피부양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하는 경우 ※부양가족제외사항 -직계존속: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3년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체류한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제외 -직계비속: 만30세미만(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체류중인 경우) :만30세이상(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1년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체류중인경 우)
다자녀	○		다자녀가구특별공급	본인	•견본주택비치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직계비속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청약신청자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않은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이상 주소변동내역표시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등재된 재혼한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하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전부공개"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만19세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한 부모가족지원법」에따라 한 부모가족으로 지정된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임신진단서	본인또는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국내의료기관으로 한정)제출
		○	임신증명및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또는배우자	•견본주택비치
		○	입양관계증명서또는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배우자	•입양한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및성년인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인 세대원전원(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배우자분리세대 세대구성원(성년인)전원제출
	○		소득증빙서류	본인및 성년인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표2.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참조
		○	사실증명원	본인및 성년인세대원	•만19세이상 세대구성원 중 소득이 없는경우"신고사실 없음"발급
		○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임신진단서	본인또는배우자	•자녀를 임신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또는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배우자	•자녀가 입양인 경우
		○	임신증명및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또는배우자	•견본주택비치
		○	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및성년인세대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견본주택비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직계존속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전체포함"하여 발급
		○		직계비속	•만30세 이상의 미혼인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1년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전체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직계존속	•직계존속(배우자직계존속포함) 및 존속의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로 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전부공개"상세"로 발급)
				배우자	•재혼 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만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직계비속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고자하는 경우
제3자 대리인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청약자	•용도:주택공급신청 위임용/인감증명서는 필히 본인 발급용으로 제출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날인(견본주택비치)
	○		신분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 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대리인	•견본주택비치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가능 함.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 임.
※주민등록표등·초본발급시"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주민등록표등본포함되어야 할 사항: 세대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등재된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주민등록표초본포함되어야 할 사항: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 주소 변동사항(전체포함), 과거 주소 변동 사항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Ⅲ 일반 공급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일반 공급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신청 자격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 및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이상인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중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자(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접수가 가능함. 다만, 청약신청자중 같은 순위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인 천안시 6개월이상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잔여 세대발생시 천안시 6개월미만 거주자 및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거주하는 신청자에게 공급함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4조제4항에 의거10년 이상 장기복무중인 군인은 해당주택건설지역인 천안시 외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천안시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아파트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입주자 저축요건을 충족시 청약가능 함.
청약신청 유의사항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전용면적"을 기준 ,나이는"만 나이"를 기준, 거주지역은"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함. •청약통장 가입조건에 따른1순위자중 1가구1주택 이상을 소유한자(청약자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포함)도 1순위 가점제에 청약이 가능 함.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시·도거주 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청약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 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2건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 함.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됨. •청약 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취소 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당첨 된 경우에 한 함.)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단,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 된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될 수 없음]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 될 수 있음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가능 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 액변경 없이 청약가능 함.)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①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함. ②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충족 기준: 청약 접수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함. ③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함. ④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기준)변경한분 신청요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절차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가능 함)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거주구분	순위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 주택	천안시 / 충청남도 / 대전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1순위	•가점제 40%/추첨제 60%적용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 제대상자로 자동전환 됨.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 하는 자.(가점제접수) ①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 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85㎡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예치금액이상인자. ③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 인정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2년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오니 청약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과거 2년 이내 가점제 적용기준: 당첨자발표일이2017.10.18.이후 민영주택가점제당첨된 경우

			부터적용)
		2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청약신청 자 전원 추첨으로 청약접수 함

■민영주택청약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9조제3항[별표2]

구분	천안시/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용면적85㎡이하	**2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102㎡이하	**3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135㎡이하	**4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가능 함.

■청약가점 점수 산정 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규칙」[별표1]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서류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미만미혼자(또는 유주택자)	0	8년이상~9년미만	18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등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확인
		1년미만	2	9년이상~10년미만	20	
		1년이상~2년미만	4	10년이상~11년미만	22	
		2년이상~3년미만	6	11년이상~12년미만	24	
		3년이상~4년미만	8	12년이상~13년미만	26	
		4년이상~5년미만	10	13년이상~14년미만	28	
		5년이상~6년미만	12	14년이상~15년미만	30	
		6년이상~7년미만	14	15년이상	32	
		7년이상~8년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 •만18세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 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 서류 ※만18세이상~만30세미만:자녀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만30세이상:자녀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 가족수에서 제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미만	1	8년이상~9년미만	10	•청약통장(인터넷 청약시에 자동계산 됨)
		6개월이상~1년미만	2	9년이상~10년미만	11	
		1년이상~2년미만	3	10년이상~11년미만	12	

		2년이상~3년미만	4	11년이상~12년미만	13	
		3년이상~4년미만	5	12년이상~13년미만	14	
		4년이상~5년미만	6	13년이상~14년미만	15	
		5년이상~6년미만	7	14년이상~15년미만	16	
		6년이상~7년미만	8	15년이상	17	
		7년이상~8년미만	9			

※본인청약가점점수=①+②+③

■청약 가점제 항목별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2조,제53조,[별표1]1호

구분	청약관련 신청자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소형·저가 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9월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9월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중 2007년9월1일에 가장 가까운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에 따른다. 가)입주자 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주택공시가격중처분일에가장가까운날에공시된주택공시가격 다)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전에 혼인한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에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 는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 부양가족수 인정적용기준	•부양가족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 로한다.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외국인 직계존속 **-내국인 직계존속 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한 경우)인 경우** ※2020.01.01.개정·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규칙」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 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포함)에 한 함.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체류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0세미만)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경우 -(30세이상)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 주택소유여부및 무주택기간산정기준	①무주택 기간 적용 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주택 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매매등 처분 사실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 등기주택은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상 처리일)기준입니다.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 되어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전원(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되어 있지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있는 공급신청자의 세대원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 소유자로 인정됩니다.
•주택소유여부 전산 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날로부터7일)내에'주택소유여부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분양권 등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기 접수일
2.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공급 계약체결일
2의3.제2조제4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분양권 등의 매매 후「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 변경일
3.그 밖에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다음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 하지 않은 것으로 봄
1.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에따른 최초 등록 기준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날부터 3개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60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신청자제외)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 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무허가 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제7696호건축법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건물이 건축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한다.
9.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관 한규칙」별표1제1호 가목2)
•전용면적60㎡이하이며,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이하, 비수도권은8천만원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 됨.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소형・저가주택"1호 또는 1세대 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 됨.
-현재 무주택자: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있는 경우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분양)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해당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 함.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주택공시가격"이라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공시된주택공시가격에따르되입주자모집공고일이전에주택이처분된경우에는처분일이전에공시된주택공시가격중처분일에가장가까운날에공시된주택공시가격을주택가격으로봄.
(단,2007.8.31.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소형·저가주택에관한특례는 일반공급 청약신청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신청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 하시기바람.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58조」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 이취 소되는 경우에는 7일이내에그명단을전산관리지정기관에통보함하여야함.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자의 명단을 당첨자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 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제1항에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각호에 따른 기간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①수도권:1년

②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다만, 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역은1년으로 한다)

③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함.

①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경 쟁이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 산정한 가점제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Ⅳ 청약신청 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신청 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다자녀가구, 신혼부부,노부모부양	2020.09.24.(목) (청약Home인터넷:08:00~17:30) (사업주체견본주택:10:00~14:00)	인터넷청약(PC또는스마트폰)	•한국감정원'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 -PC: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당사견본주택: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신방동785-16번지
일반공급	1순위	2020.09.25.(금)08:00~17:30	인터넷청약(PC또는스마트폰)	•한국감정원'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 -PC: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2순위	2020.09.28.(월)08:00~17:30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청약 홈"검색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 앱으로 미리 저장 하시기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05.04.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의거 특별공급 신청방법이'견본주택방문신청'에서인터넷(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청약신청'으로 변경 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등에 한하여 견본주택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불가)허용됩니다.(방문접수시간:10:00~14:00)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등)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본·지점에서 청약이가능(창구접수시간:09:00~16:00)

※청약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당일 청약신청마감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종료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해당순위청약신청일08:00~17:30)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합니다.

한국감정원(숏은행청약자: 국민은행포함)-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청약시]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공인인증서를 통한로그인⇒「청약신청」⇒「APT청약신청」⇒청약자격등 입력⇒청약완료 **[스마트폰청약시]**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청약홈"검색)접속⇒공인인증서를 통한로그인⇒「청약신청」⇒「APT청약신청」⇒청약자격등입력⇒청약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운영하는"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사업주체 안내: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①[행정정보자동조회]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청약신청시, 신청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선택사항이며,청약신청당일 지자체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주택형선택및행정정보자동조회」⇒「서비스이용 동의시」.단, 미동의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자격을 판단하여 입력가능

②[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신청」.단,세대구성원 등록생략시 신청자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검증

※상기 접수시간(17:30)은청약접수완료 기준으로 청약신청진행중이라도 접수완료 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청약내용을 잘못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 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청약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 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시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가입은행비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포함)통장 •예금인장또는본인서명 •본인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제외동포(국내거소 신고증)/외국인(외국인등록증)
	제3자 대리 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포함)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함 -청약자의 인감증명서1통(용도:주택공급신청 위임용)단,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 나이에 관한공정증서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생략)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접수 장소비치)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은외국인등록증)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제출생략가능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제출)
※주민등록표등·초본발급 시"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신청을 해야 함.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서명]은 접수 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결정

구분	선정 방법
특별공급입주자 및 예비입주자선정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선정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일반공급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특별공급대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특별공급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입주자 및 예비입주자선정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선정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높은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해당 거주지역추 첨제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전용면적85㎡이하: 일반공급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적용 •동일순위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포함)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6개월 이상 계속 거주신청자가 천안시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입주자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포함)가 일반공급세대수의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세대수의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1순위: 일반공급세대수의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없음)하여 가점이 높은자를 앞순번으로 선정** ***가점제가 적용되지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발생시 예비입주자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취소 또는 미계약물량과 해당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명단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2018.05.04.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감정원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등 인터넷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접수(견본주택)가가능합니다. • 인터넷청약(한국감정원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않고 당첨자공급계약체결전 사업주체앞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견본주택)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합니다. • 특별공급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적용)되고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에 인터넷청약신청의방법으로 신청하여야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예비선정에서 제외)하고,특별공급신청자가 타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청약시 둘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1명을 말함)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내 2명이상이 각각 신청하는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처리합니다.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 기관종사자등 특별공급(규칙제47조)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예비입주자의 입주자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청약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당첨 및 계약이 임의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20.02.28.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등 예비입주자선정비율 확대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일반공급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배정 및 계약)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공급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처리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됨.
• 동·호수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7일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V 당첨자 발표 및 자격확인 서류제출

■ 일정 및 당첨자 서류 제출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발표	당첨자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및 검수 (계약체결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확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신혼부부, 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	•일시 : 2020.10.08.(목) •확인방법 -한국감정원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 조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후 조회가능	• 일시 : 2020.10.12.(월)~2020.10.19.(월), 총8일간 • 장소:당사견본주택(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785-16) - 특별공급당첨자 : 특별공급신청자격별 구비서류 및 계약체결 서류지참 - 1,2순위당첨자 : 순위자격별 구비서류 및 계약체결 서류지참 ※ 계약체결일에 계약체결 소요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일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류검수 접수건수의 과밀로 인한 검수일정 및 운영시간이 상이할 수 있음.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확인시에는 공인인증서로그인후 조회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주택형,성명,생년월일 입력)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청약신청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시 개별 서면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유무 전산검색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하며 개별 서면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서비스 이용안내

구분		한국감정원청약Home(全은행청약자)
이용기간		2020.10.08.(목)~2020.10.17.(토)(10일간)
인터넷		- 한국감정원'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청약조회→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당첨조회→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사항은 연중 확인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0.10.08.(목)08:00(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중복청약 및 이중 당첨자 처리기준

- 특별공급대상자 : 당첨여부미확정으로 일반공급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당첨시 특별공급만 인정함.
- 일반공급의 경우 청약신청은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1인1건만 가능하며, 중복신청.당첨시 모두 무효처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이후 당첨된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계약체결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함에 따라 계약체결이전에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아래 계약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신청자격, 세대주, 당해거주요건, 주택소유, 배우자분리세대확인 등)
- 사전검수기간내에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이후 부적격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취소, 다른 주택의 입주자선정제한 등)이 발생함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전 기간내에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자격적격성 여부를 점검받으시기 바람.

■ 자격확인 공통 제출서류(당첨자/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제출기간 내 제출 필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약서	-	•견본주택비치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주택공급신청용(본인발급용)
	○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생략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사본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사본1통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1통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세대구성사유 및 일자,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포함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주민등록번호,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포함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전부공개"상세"로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계약자	•현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발급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1개년도 발급(주민센터 또는 민원24발급가능)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직계	•피부양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하는 경우

				존속/비속	※부양가족제외사항 -직계존속: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기준 최근3년이내 계속하여90일을 초과하여 해외체류한 경우)인경우에는 부양가족제외 -직계비속:만30세미만(입주자모집공고일기준 계속하여 90일초과하여 해외에체류중인 경우) :만30세이상(입주자모집공고일기준 최근 1년내 계속하여 90일을초과하여 해외에체류중인 경우)
		○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주사실증명서	재외동포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사본 또는 국내거주사실명증명서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복무확인서	본인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10년이상)명시
특별공급	○		특별공급신청자격별 구비서류	-	•표1.특별공급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참조하여 제출 ※신혼부부특별공급당첨자는 표2.신혼부부특별공급소득증빙서류를 참조하여 추가 제출
일반공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직계존속을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고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직계존속의 배우자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본인 및 세대원전원의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전부공개"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만30세이상 미혼의 피부양직계비속을 과거1년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사항,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만18세이상의 미혼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상세"로 발급) ※청약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한 경우에 한함
		○	혼인계증명서(상세)	본인	•만30세미만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전부공개"상세"로 발급)
부적격통보를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소명자료)		○	무주택소명서류	해당주택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소명서류	본인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제3자대리인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청약자	•용도:주택공급신청위임용 ※인감증명서는 필히 본인발급용으로 제출
		○	위임장	청약자	•견본주택비치
		○	신분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재외동포는 재외국민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사본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1통)
※ 상기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외국인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선정사실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이전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계약시 위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시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바람.(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2005.06.28.「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기준 6개월내 기간 중 90일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 청약신청자는 사업주체에게 정식 발령공문 등에 의한 해외체류인지 단순 해외여행인지 여부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며, 미제출시 부적격처리될 수 있음.
※ 거주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서류만 인정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발급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세대주성명 및 관계","주소변동이력 및 일자"등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추후, 계약시 계약구비서류 변경 또는 추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신청시, 제출서류명확화(제23조제2항및제3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일정기간 거주증명)이 필요합니다.

Ⅵ 계약 일정 및 체결 절차

■ 계약체결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계약금)로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구분	계약일정	계약장소	비고
당첨자 계약체결	`2020.10.20.(화)~2020.10.22.(목),총3일간	당사 견본주택(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785-16)	-

※ 순위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일반공급1순위,2순위당첨자포함)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이후 미계약 세대발생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없이 사업주체에서 임의 분양함.
※ 지정계약기간내에 계약금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내 계약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아래 "계약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절취, 청약관련서류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뿐만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법령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자의 청약관련예금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계약시 체결된 건물의 공급면적 및 대지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경우에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1%이내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변동에 대해서는 상호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4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전산검색 및 계약신청시 제출서류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함.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동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②계약체결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부적격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사유가 고의성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1년,수도권 외6개월,위축지역3개월'(공급신청하려는지역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③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기간(7일)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당첨 소명기간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
• 부적격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4항
①같은청약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자.

②같은청약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7일)에 재산정한 가점제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또는 공급순차별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점수 또는 자격이상에 해당하는 자.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타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을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신청인에게 귀속됨.
• 입주지정일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빛공해(단지내 도로설치로 인한 자동차전조등 등을 포함한다),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행정구역 및 단지내 명칭,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한 것으로 봄(변경시에는 입주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등은 착공도서의 내용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임.
• 계약체결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함.
• 발코니확장 계약체결을 미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사업주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품목제공혜택을 받을 수 없음.
•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하는 마감재선택사항 및 발코니확장계약 등 추가 선택품목계약은 변경이 불가하며,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 품목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해제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구조 및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01.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하며, 거래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체결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계약금과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납부일에 아래의 해당금융기관계좌로 입금하시기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중도금, 잔금	KB국민은행	928701-01-203280	케이비부동산신탁㈜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하시기바라며, 당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않음.
• 분양대금납부계좌는 향후 금융기관과의 CMS체결로 타행입금 등이 제한될 수 있음.
• 무통장입금증은 계약체결시 지참요망.(무통장입금증은 분양대금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바람)
• 무통장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바람. 단, 무통장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예시-101동1502호계약자→'1011502홍길동'/103동702호계약자→'1030702홍길동')

■계약자 대출안내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시행위탁자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대출 은행의 알선은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본 주택은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일부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대출은 이자후불제로, 계약자는 대출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따라 중도금대출에 필요한 각각의 인지세 등 제반경비 및 보증수수료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자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 불가자는 공급대금 납부 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도금 대출 약정기간은 시행위탁자가 지정하는 입주지정일 초일 직전의 이자 납부일까지 이며, 이 기간까지의 중도금 이자는 시행위탁자에서 우선 납부하고 추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시행위탁자가 대납한 대출이자와 잔금을 같이 납부하여야 하며(입주 지정기간내 입주하지 않을 경우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지정기간 초일부터 부과되는 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직접 해당 대출은행에 이자를 납부하여야 함.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약정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 되더라도 사업주체,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은행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 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은행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은행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계약자가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57조에 의한 분양가상한제미적용 민영주택이며,「주택법」제64조제1항 및「주택법시행령」제73조제1항[별표3]규정에 의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전매가 가능함.
(단, 향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법적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의 책임임.(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음)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 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함.
•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중도금대출기관으로부터 위표시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시 해당 대출기관이 발행한 전매당사자간의 대출승계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함.
• 전매자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분양권전매금액이 최초 체결한분양계약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당사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짐.
• 계약자 또는 분양권양수인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함.

Ⅶ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품목 계약

■발코니 확장

(1)발코니 확장 공사금액(계약시 10%, 잔금납부시 90%) (단위:원. VAT포함)

주택형	발코니확장금액	계약금(10%)	잔금(90%)	발코니확장 시 무상제공 옵션
		계약시	입주지정일	
59A	11,900,000	1,190,000	10,710,000	1.외부샤시 단열이중창설치 및 세대마감재 추가 2. 확장형 주방가구 설치 3. 자녀방 붙박이장 설치 4. 부부욕실비데 설치 5. 안방드레스룸 시스템선반 설치 6. 알파룸 설치(59B 제외)
59B	11,900,000	1,190,000	10,710,000	
75A	15,300,000	1,530,000	13,770,000	
84A	16,800,000	1,680,000	15,120,000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발코니확장은 건축법시행령제2조제14호, 제46조제4항, 제5항 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음.
- 발코니확장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발코니확장을 거부할 경우 사업주체는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음.
-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는 별도로서 VAT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외부샤시(비확장 발코니 외부창호 포함), 확장형 주방가구, 자녀방 붙박이장, 부부욕실비데, 안방드레스룸 시스템선반, 알파룸(59B제외) 설치비용이 포함됩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및 유상 옵션사항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입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및 유상옵션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자재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발코니확장계약이후에는 계약해제가 불가하며, 일정시점이후에는 추가 계약이 불가함.
- 발코니확장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홍보물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바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상층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환기구위치, 에어컨매립배관위치, 세대간 마감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 습도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함(겨울철 실내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기 쉬우며, 각 세대에 설치된 환기시설을 주기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환기시 결로발생예방에 도움이 됨)
- 발코니확장 창호는 내풍압구조검토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입찰결과에 의해 제조사 및 브랜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새시는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 시공시 인·허가협의완료 후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외벽은 발코니확장 등으로 단열재추가설치시 구조체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시 외관구성상 일부 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또한 선홈통을 가리기위한 벽체가 설치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형의 발코니확장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새시설치기준은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실시공시 공동주택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발코니확장형선택시 확장형태에 따라 드레스룸형태, 선반개수, 사이즈등이 상이하며, 이에 따른 설치되는 가구증가분이 발코니확장금액에 반영됨.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기준-「건축법시행령」제2조제14호, 제4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내에서 구조변경할 수 있음.

(2)발코니 확장공사비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발코니확장비	KB국민은행	928701-01-204021	케이비부동산신탁㈜

-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납부 일정과 납부금액은 당사가 적의조정한 공사계약서에 준함.
- 지정된 계약금, 잔금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않음.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7자리 및 계약자명을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예시:101동1502호:'1011502홍길동'/107동702호:'1070702홍길동')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 유상옵션 선택품목

1) 시스템 에어컨(공청포함)

(단위:원. VAT포함)

타입	옵션선택	에어컨 설치 위치	천정형 시스템에어컨(공기청정기능포함)	제조사	비고
59A / 59B	선택 1	거실 + 침실1(안방)	3,524,900	삼성전자	실내기 2대
	선택 2	거실 + 침실1(안방) + 침실2 + 침실3	6,117,400	삼성전자	실내기 4대
75A	선택 1	거실 + 침실1(안방)	3,691,000	삼성전자	실내기 2대
	선택 2	거실 + 침실1(안방) + 침실2 + 침실3	6,628,000	삼성전자	실내기 4대
84A	선택 1	거실 + 침실1(안방)	3,715,000	삼성전자	실내기 2대
	선택 2	거실 + 침실1(안방) + 침실2 + 침실3 + 알파룸	7,837,900	삼성전자	실내기 5대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신청세대는 기본제공 2개소(거실, 침실1)인 매립형 냉매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콘센트 설치공사를 제외하며, 시스템에어컨 판매가는 해당실의 냉매배관 및 전기콘센트 설치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 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제조사의 도산 혹은 설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내기는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일부 제외 및 추가가 불가하며, 이는 공기청정형 선택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옵션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고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발코니 확장 계약 시 선택이 가능한 유상옵션 입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 침실1, 냉매배관만 시공 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별도의 리모콘을 제공합니다.

2) 빌트인 가전

(단위 : 원, VAT포함)

타입	품목	제조사	옵션선택	모 델 명	금 액	비 고
전타입	비스코프 (냉장+냉동+김치)	삼성 전자	Satin/Glam	RR39T7695AP	4,618,000	택1
			Cotta	RR39T7695AP	4,158,000	
	스마트 오븐	삼성 전자	고급형	HSB-N361B	320,000	
	전기렌지(하이브리드)	쿠 쿠	고급형	CIHR-FLB303FB	500,000	3구 가스쿡탑 제외 금액
	공용욕실 비데	노 비 타	고급형	BD-AC50L	178,000	
59A	시스템가구(시스템선반 + 가구도어)			제작일식	1,201,000	
75A					1,170,000	
84A					1,950,000	

- 빌트인 비스코프(냉장+냉동+김치) 미선택 시 수납장 및 일반냉장고 설치공간이 마련됩니다.
- 광파오븐렌지 옵션 미선택 시 수납장이 설치됩니다.
- 전기렌지 옵션 미선택 시 3구 가스쿡탑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가구 미선택 시 알파룸이 설치됩니다.
- 상기 유상옵션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유상옵션품목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설치된 제품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또는 해약을 요구 할 수 없으므로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 사항

-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과 관련하여 납부되는 금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와 제4조의2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범위에서 시공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플러스옵션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품목은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합니다.
 (유상옵션품목 계약체결 일정은 공급계약이 체결된 입주예정자들에게 별도 안내문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 유상옵션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 할 수 없습니다. (옵션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유상 옵션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의 취득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유상 옵션공사비(부가세포함)는 옵션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옵션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수량, 종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별도 계약품목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당사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옵션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수량, 종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5)추가 선택옵션 납부계좌
•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납부 일정과 납부금액은 당사가 적의조정한 공사계약서에 준함.
• 지정된 계약금 및 잔금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무통장입금시에는 동·호수7자리 및 계약자명을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예시:101동1502호:'1011502홍길동'/107동702호:'1070702홍길동')
(단,무통장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자는 소명기간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 추가 선택옵션금 납부계좌와 아파트분양대금납부계좌 및 발코니발코니확장대금납부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람.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유상옵션 선택 품목	KB국민은행	928701-01-204021	케이비부동산신탁㈜

• 옵션품목비용을 납부한 무통장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확인서 등은 계약체결시 지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Ⅷ 단지여건 및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주요사항을 숙지하기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초/중학교 배치 관련 유의사항
• 본 공동주택은 입주시점에 학교배정 등 교육정책은 관할지역교육행정기관의 정책에 따름. 천안교육지원청 협의사항에 따라 초등학교배치학교는 **천안청룡초등학교**(새샘초등학교학생배치가 불가)이며,통학에 관한 사항은 천안교육지원청과 협의예정임을 청약,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학교 학교군(구)은 **천안2학군**으로 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의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학군내 지망별 컴퓨터추첨에 의하여 배정(입학)하고 있으므로 거주지 인근 중학교로의 배정(진학)이 어려울 수 있음.

■ 송전선로 존재관련 유의사항
• 사업부지 진출입로 우측의 신설도로인 소로1-549호(폭11.5~14.5M)상으로 경과하는 송전설비는 154kV 장재-천안 송전선로1517호 #1·2T/L(No.15~17) 구간임.
• 본 송전선로는 한국전력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 천안구룡지구도시개발조합, 삼부르네상스(주)간에 지장송전선로 지중화공사 협약(2020.07)체결에 의해 공동주택 골조공사완료전까지 지중화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 케이블 선종 및 회선수 : XLPE 2000㎟[D]×2C, 구간은 신설 C/H 15~ 신설 C/H 17, 케이블헤드(C/H)의 형태는 지상배치형 설치(도색 포함): .
• 지구경계와 송전선로와의 이격거리는 우측경계로부터 85.55M , 좌측 경계로부터 47.54M,(단,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선로 지중화 과정에서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송전선로 지중화공사 기간은 2020.07.01. ~ 2021.10.31.(예정)
• 국내 및 국제 전자파 기준
- 국내기준 : 83.3μT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7]
- 국제기준 : 200μT [세계보건기구(WHO)의 ICNIRP 가이드라인 준용]
• 송전선로 평균 전자파 측정값 (단위 : μT)

전압/거리	0m	20m	40m	60m	80m	100m	국내기준대비
154kV	**0.59**	**0.33**	**0.2**	**0.18**	**0.14**	**0.12**	**0.14%~0.7%**

• 송전선로존재관련 내용은 청약 계약체결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관련 유의사항
• 선순위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선정비율(일반공급세대수의 4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기준)이 동일한2개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2건이상 청약시는 청약 모두 무효처리함.
• 입주자로 선정(2순위당첨자포함)된후 계약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상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람.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인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서명]은 접수받은 직원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함.
• 본 아파트의 당첨자는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할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음.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됨.
• 당첨 및 계약체결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함.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관련 유의사항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조감도 또는 사진은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있으므로 사업계획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주변현황,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및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음.
• 견본주택은일정기간공개후관계규정에의거폐쇄또는철거할수있으며,이경우철거전견본주택내부의평면설계및마감자재등은촬영하여보관할예정임.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및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단위 세대내부에 연출용 전시품(인테리어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전시용품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월패드,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견본주택 소화시설물로서 본 공사시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됨(본 공사시 상기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마감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분양홍보물 관련 유의사항
• 홍보용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공급안내문,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보시기 바람.
•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의 가구 및 각종 내부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디자인, 색상 등)와 홍보물[단지 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조경,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등의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평면도, 조감도, 배치도, 이미지컷,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조감도 및 배치도, 인근의 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람.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단지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각종 법면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공간계획은 인허가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시설(도로,학교,공원등)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에 제작된 사전홍보자료는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계약전 견본주택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어 계약시 착오없으시기 바람.
•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관련 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가능하오니,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확인후 청약 및 계약을 해야함.

■ 설계 관련 유의사항
• 계약전에 사업부지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혐오시설유무, 도로, 건물,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및 주변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주택법시행규칙제13조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허가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시 대지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광역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음.
- 단지외 설치되는 도로 등 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기타 외부인 통행등에 대하여 입주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사업부지외 인근의 신설.확장도로는 인.허가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음.
- 본 아파트 주변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분진, 악취, 조망권, 사생활권침해 및 기타 외부인 통행에 대하여 입주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계획승인 당시 계획된 소음치가 주변지역여건의 변화로 건물완공 후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차량증가로 인한 입주소음에 대하여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카다로그 등에 표시한 단지 외부시설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업주체의 시공범위가 아니며,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임.
- 본 공고문에 명기되거나 명기되지 않은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시 견본주택 및 현장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지경계명시측량 및 확정측량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물건의 단지배치, 단지내도로선형,조경(수목,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위치, 단지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구획선, 단지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공급면적 등이 계약체결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입면차별화 및 기능개선 등에 따른 사업승인변경 등으로 인하여 옥탑, 지붕, 측벽, 입면(전후면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등의 디자인 및 재료의 변경과 일부 동의 세대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문양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입면특화등을 위한 외부몰딩을 설치할 경우 등으로 인하여 일부 세대는 높은 턱이 생길 수 있음.)
- 단지 명칭 및 동번호, 외부 색채와 외부 상세 계획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색채심의등을 포함)결과 및 법규변경, 디자인의 개선등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조경,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조경수식재위치 등은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시설물에 따른 조경선형이나 포장 및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하며, 입주후 불법구조물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 단지내 도로등의 경사도 및 단지레벨은 시공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지상에서 각 동으로 진입하는 주동출입구의 위치는 필로티유무, 주동형태 및 대지의 단차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배치상기계실, 전기실, 급배기구, DA, 쓰레기분리수거함, 지하휀룸, 인접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악취), 해충, 분진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PIT는 변경사용될 수 없으며, 아파트지하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부대시설사용에 대하여 각동별계단실등의 위치에 따라 접근거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위세대의 구조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제외)을 변경하지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 설비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등이 상이할 수 있음.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폭, 레벨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으며, 배치도(CG, 모형등)의 바닥마감패턴, 칼라 등은 추후 디자인의도 및 인허가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주민공동시설,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용량·속도·탑승위치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샷시의 설치유무, 형태 및 사양은 동별, 층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배치상동별, 층별차이 및 세대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조망,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수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단지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자전거보관소 등 단지내 시설물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 조명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건물에 의하여 조망권침해 및 일조량감소가 될 수 있음.
- 단지내 지하시설물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D/A)이 노출될 수 있으며, 단지배치상 근린생활시설실외기설치공간,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급배기타워 및 분리수거함 등의 위치에 따라 저층부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상세한 위치 등은 견본주택에서 모형, 사업승인도서 등의 홍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환기용그릴 등은 본 시공시 디자인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세대의 경우 현관전면에 엘리베이터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계약전에 도면 및 모형 등을 확인하기 바라며, 현관전면에 계단실은 동·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차이가 있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부대시설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하며, 이로 인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내 바닥포장, 지상, 지하동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음.
- 단위세대 창호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은 안전성에 따라 본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창호계획에 있어 주거활용도향상을 위하여 위치 및 크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외레벨차에 의한 옹벽구간은 세대별조망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화장실천장에는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 유니트에는 공용 설비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도시가스공급자에 의해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가스정압실이 단지내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저층부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세대온수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등이 세대 주방가구 싱크볼하부, 파우더룸 하부, 신발장 내부 또는 배면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구내부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분전함, 세대통신함은 침실, 주방 등의 벽체에 노출하여 시공되며, 위치 및 형태가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내 조명기구, 월패드 및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공장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자체의 품질상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함.
- 현관신발장, 주방가구, 일부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 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필로티층에 인접한 세대는 프라이버시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세대는 바닥난방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음.
- 건물과 건물사이의 보행자통로, 주변도로 및 광장 등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도로인접 및 주변부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각동에 인접한 부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휴게시설, 옥외시설물, 광장, 주차장진출입구, 차량차단기, Drop-zone 등의 이용에 따른 소음 및 차량불빛 등의 사생활권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진동이 발생될 수 있고, 각동 저층세대는 근린생활 시설과 부대복리시설에 의해 소음 및 프라이버시침해가 있을 수 있음.
-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 공조, 전기 등의 설비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전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하며,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강화등으로 세대내부에 자연환기량감소 및 습도증가시 결로현상이(심하게)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아파트옥탑층에 의장용구조물, 태양광집열판, 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일부세대는 옥외보안등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옥외보안등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름.
- 경관조명, 측면로고설치 등이 설치 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함.
- 본 아파트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 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실버룸, 어린이집, 피트니스, 작은도서관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제외되며, 마감재 및 제공품목, 진출입동선계획등은 인,허가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및 단지내 지하주차장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면적증감 등 설계변경될 수 있음.
-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가전제품, 부동산중개등)는 본 사업과 무관하므로 특히 계약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세내내부에 설치된 환기설비(환기캡등)는 견본주택환기를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시 설치되지 않음
- 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기계식 환기 방식으로 시공됩니다.
- 일부세대의 경우 서비스 면적확보 및 발코니확장을 고려한 평면설계로 비확장시 통행이 어려운 폭의 발코니구간이 있음.
- 단지내 각동 인근생활 폐기물분리보관시설등이 노출되어 저층부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설치위치, 규모 등은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외관 및 옥상에 경관조명이 설치될 경우 야간에 빛에 의한 환경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시공시 대피공간의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견본주택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도로(지하주차장램프포함), 지상주차장, 근린생활시설, 실버룸,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에어컨, 실외기소음 등),조망권 및 일조권침해,자동차 전조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본 공사시 세대마감자재(수전및액세사리류)의 설치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확장세대와 비확장세대가 좌.우.상.하에 인접하는 등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인접한 세대의 발코니미확장으로 인한 단열재시공으로 벽체가 일부 돌출될 수 있음.
- 복도 및 세대점유공간 천장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세대가 속한 동 및 라인에 따라 세대입구공용부분 등이 상이하오니,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람.
- 발코니확장부위는 직접외기에면해 상대적 추위를 느낄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샷시 및 유리창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기적 실내환기는 결로발생예방에 큰 도움이 됨.
- 발코니확장공사로 인한 면적 및 마감형태(돌출/변형)등이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격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함.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구조에 따라 발코니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함.
- 단지 경계 및 주변단지와의 레벨차이로 인해 옹벽이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각적 프라이버시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아파트단지는 준공시 소음측정결과에 따라 일부 구간방음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의 일조 및 조망, 소음등에 의한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체결하여야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높이는 지하1층주차장2.7m, 지하2층주차장2.3m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차장법시행규칙제6조1항5호 및 6항에 적합하게 설치되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향후출입구높이와 관련하여서는 시공상 높이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동에 인접하여 입주민보행자 동선을 위한 계단 및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해당동은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필로티, 보행자, 비상차량동선 등으로부터 소음 및 시각적 프라이버시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동지하에 제연휀룸 및 통신실(점검실)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동에 인접하여 D.A설치에 의한 소음, 진동 등 환경권침해와 시각적 프라이버시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 도로 및 지상주차등으로부터 소음 및 시각적 프라이버시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사업주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품절,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질,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임.
- 해당주택의 입주후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는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주차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되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에 따라야함.
- 홈페이지, 견본주택, 카다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소음측정결과 법적기준에 미달시 일부 도로변에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의 일조 및 조망권, 소음 등에 의한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체결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수 있음.
- 단지내 전기공급용개폐기(PADS/W)설치로 인하여 미관저해 및 조망권,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
- 입주자모집공고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

※ 다음과 같은 설계 및 시공관련 주요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동별 설계상 주요 유의사항

구 분	공 지 내 용
101동	북측근린생활시설-1과 동측20m도로변에서 저층부에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남측주출입구차량출입으로 인한 차량불빛이 저층부에 발생될 수 있음
102동	지붕에 태양광모듈이 설치됨 남측커뮤니티광장과 접하여 저층부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북측노상주차장에서 차량불빛이 저층부에 발생될 수 있음
103동	지붕에 태양광모듈이 설치됨 지하층기계실과 근린 생활시설-2에서 진동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남측보육시설에서 저층부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서측과 북측의 노상주차장에서 차량불빛이 저층부에 발생될 수 있음
104동	남측어린이놀이터, 북측유아놀이터와 접하여 저층부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부출입구 주변에서 차량불빛이 저층부에 발생될 수 있음
105동	동측20m도로변과 남측어린이놀이터와 접하여 저층부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북측주출입구 관련 차량불빛이 저층부에 발생될 수 있음
106동	1층필로티 남측부분 단차발생됨 후면어린이놀이터2에서 저층부 소음발생될 수 있음 남측전면발코니앞 일부구간에 필로티와 연계된open구간발생됨
107동	11.5m도로변대지내측부로 사면구간발생함(저층부조망관련) 1층필로티 남측부분 단차발생됨 남측전면발코니앞 일부구간에 필로티와 연계된open구간발생됨
108동	11.5m도로변대지내측부로 사면구간발생함(저층부조망관련) 지하층게스트하우스, 북측계단실설치, 후면 어린이놀이터로 저층부에 소음발생될 수 있음 부출입구 차량출입으로 인한 차량불빛이 저층부에 발생될 수 있음

• 분양과 인허가 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분양 후 경미한 변경 등을 진행할 예정임.
•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인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인허가 진행 및 본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옥탑장식물, 몰딩, 창틀모양 등), 지하출입구 1층 출입구, 외부시설물(난간 디테일, 문주, 천장, 드라이에어 패턴 등은 구조 및 심의 디자인의도에 의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부위별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홀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인허가 조건에 따라 개폐가 불가능한 고정창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환기를 위하여 일부층에 개폐가 가능한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됨.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 일체의 운영 및 유지관리는 입주민이 자치적으로 하여야 하며, 이동식가구 및 가전, 소모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음.
• 주민공동시설의 운동시설은 제공되지 않음.

■ 기타 유의사항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2019.12.10.일부개정)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0.04.17.일부개정)에 의거함.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요청시 분양계약관련사항(일부 개인정보포함)을 제출할 수도 있음.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내용변조등의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본 모집공고의 제반내용 및 건립된 견본주택은 2020년 6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도면을 기준으로 설치되었으며, 향후 인·허가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않음.
• 주택도시보증공사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세대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시 확정측량)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당시가격을 기준으로 상호 정산하기로 함.
• 일부세대는 공사시행중에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계약면적과는 소수점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음.
• 계약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청약 및 계약전 사업부지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시공, 부동산중개업자의 영업행위등)는 천안신방삼부르네상스, 삼부토건㈜은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포함)으로 통보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통보누락으로 인한 당첨자의 손해에 대해서 사업주체는 일절 책임지지 아니함.
• 도시개발사업의 특성상 대지권 구분등기,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절차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 실대지측량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물건의 견본주택(견본주택),단지배치, 단지내 도로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홍보물, 단지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대지인접도로 또는 단지내외도로와 단지내비상차로등에 인접한 저층세대에는 차량소음, 자동차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분양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시 착오없으시기 바람.
• 외국인이 국내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주택 구입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60일이내 부동산취득신고를 해야하고,
- 국내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취득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부동산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취득신고를 해야하고,
- 영리목적법인의 국내설립후 토지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중도금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중도금대출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여야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본 아파트 각 시설의 명칭, 외부 상세계획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색채심의, 법규변경, 현장시공여건 및 상품 등 디자인개선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바람.
• 인접지역개발등의 사업으로 개설되는 도로 및 개발계획등은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홍보물, 단지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도로 및 개발계획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일부변경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바람.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내용은 형별, 타입별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일체는 삼부토건㈜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등 중대한 변경사유발생 및 마감수준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음.
• 단지 내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시행위탁자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등은 입주후 입주자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음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종료일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구성시까지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세대에 부과하고, 단지별 시설차이로 인한 일반 관리비는 상이할 수 있음).
- 타사 또는 삼부토건㈜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아파트를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조경의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아파트계약자의 경우 아파트계약면적외의 근린생활시설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단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서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폭, 선형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명칭 및 단지내 명칭, 동번호는 입주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분양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므로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법시행규칙제13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용검사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공용부분 시설물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사용검사 전·후최종사업승인 도면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조감도, 세대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진행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관주도의 계획에 의한 주변 개발계획은 관련 인·허가청주관사항으로 사업주체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같은 타입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지 주변환경은 청약 및 계약시 견본주택 및 현장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 세대/규격
- 분양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 창호 및 문의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책자기준으로 시공되나 기능상의 향상을 위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시 확장부분의 외부샤시는 이중창호등으로 설치되어 향후 입찰결과에 따라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대피공간내 비상시 대피가 가능한 하향식피난구는 세대당 1개소설치(피난층 제외)로 위.아래층 교차시공되며, 설치에 따른 소음 등이 생길 수 있음.
- 대피공간방화문과 하향식피난구간섭을 피하기 위해 문틀 혹은 바닥단차가 조정될 수 있음.
- 실외기실 혹은 발코니2(세탁실)의 천정에는 환기시스템의 장비 및 덕트가 노출로 설치되어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용냉매 매립배관은 거실(스텐드형)과 침실1(벽걸이형)에 매립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선택(설치)시 기본제공되는 냉매매립배관과 관련시설물(콘센트)이 설치되지 않으며, 시스템에어컨판매가는 냉매매립배관 및 관련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임.
- 기본에어컨이 아닌 추가 설치에어컨은 실외기설치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됨.
-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에어컨추가설치시 별도의 실외기고정가대를 설치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함.
- 주방상부장이 가스배관 등 타시설물과 간섭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의 깊이축소 및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음.
- 세대내 설비배관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발코니2(세탁실)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되며, 가스배관 및 계량기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가스배관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로 설치될 수 있음.
- 발코니 혹은 보조주방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되며, 가스배관 및 계량기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가스배관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로 설치될 수 있음.
- 실외기실 및 기타 발코니의 외부창호 및 난간턱높이와 수벽의 높이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릴창호의 재질 및 사양등은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대피공간, 발코니, 실외기실 내부에는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음.
- 단위세대의 드레스룸, 팬트리, 욕실에 바닥난방이 적용되며, 별도의 난방조절기는 설치되지 않고 평면에 따라 거실 및 인근 침실에서 통합제어됨.(욕조, 샤워부스, 양변기, 세면기하부공간은 바닥난방 시공제외)
- 단위세대에 적용하는 안목치수 및 발코니면적산정등의 법규는 기본형평면(단, 단열관련기준은 관계법령에 따라 기본형 또는 확장형으로 진행가능)을 적용하며,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유·무상옵션(아트월, 가구, 가변벽체, 창호옵션, 기구 등의 유사한 사항등)으로 추가되는 마감재, 가구, 기구, 벽체 등의 두께(치수)는 안목치수산정시 제외하여 기본형평면의 안목치수를 적용함.(단, 안목치수 산정시 주택의 설계도서작성기준에 따라 마감두께에는 벽지바름층의 두께 등 미세한 치수(걸레받이, 천장몰딩, 벽지 등)를포함하지 않음)
- 현관, 발코니, 실외기설치공간의 경우 비난방공간임(냉장고, 김치냉장고장 하부는 난방미적용).
- 단위세대의 온수분배기는 주방싱크하부장에 설치되며, 싱크하부장 일부공간을 사용할 수 없음.
- 후드상부장에는 주방자동소화장치가 가스, 전기겸용으로 설치되며, 후드상부장 일부공간을 사용할 수 없음.
- 하이브리드쿡탑 옵션 선택시에도 주방가스공급용배관이 설치되며, 상부장하부에 가스차단기설치후 캡마감처리됨.
- 당현장은 물절약정책의 일환으로 세대수압을 2.5kg/cm2으로 제한되므로 수압이 약하게 느낄 수 있음.
- 양변기는 관련법에 의거 절수형 양변기를 적용하여 일반양변기에 비해 배출성능이 약하게 느껴질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개별 난방방식으로 발코니2에 개별가스보일러가 설치되며,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고,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동절기 보일러 연도의 결로로 인해 낙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동절기 결로낙수와 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각실 발코니확장 및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기구류(콘센트, 조명기구, 환기구 등)의 사양 및 설치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3층부터 10층세대 대피공간에는 완강기가 설치되며, 본 공사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기본형(비확장)선택시 일부실의 사용이 불편할 수 있음.
- 저층세대의 외벽마감재설치에 따라 외부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가 변경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등의 위치, 개소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선홈통배수관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미관상 저해요소가될 수 있음.
- 발코니에 노출되어 있는 우수관 및 배수관의 위치 및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형 시공시 외관구성상 일부 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에 따라 이중샤시, 단열재의 추가설치로 발코니실 사용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확장하였고, 확장비용은 분양가에 미 포함되어있음.
- 인허가과정 및 실제 시공시 사용성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 실외기 설치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하여 창호 및 실외기 설치공간루버는 닫힘 상태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혹한기에는 최소한의 난방가동이 필요할 수 있음.
- 세대내부의 욕실단차는 바닥구배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음.
- 주방 및 욕실의 환시설비는 입상 덕트 및 옥상 무동력 휀을 이용한 직상 배기로 계획되어 있음(세대별 당해 층 직배기로 시공되지 않음)
- 세대 환기시스템을 위한 배기용 환기구가 외벽에 설치됨
- 세대내부가구(주방가구, 욕실가구, 신발장, 침실붙박이장)설치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부부욕실 및 공용욕실은 외부창이 설치되지 않음.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 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본 아파트는 발코니확장을 기본으로 적용하여 비 확장형을 요청하거나 선택할 수 없음.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기 바람.
- 아파트입주자의 하자보수관련 일체의 입주자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적용됨.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의류관리기, A/C실외기등), 가구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불가할 수 있으니 계약전 필히 확인하여야함.
- 실 시공 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정내설비배관설치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방가구(하부장)의 하부에는 부식 등의 하자방지를 위하여 마루(바닥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신발장등 가구뒷벽과 하부에는 벽지 및 타일 등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신발장 하부에 급수계량기기 시공 될 수 있음(일부 해당세대)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도어에 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휨 방지부속을 입주자가 추가로 설치할 수 있음.
- 세대내 목문 ,PVC문의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 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부마감재, 가구, 전기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내부조적벽체(침실, 욕실, PD등의 부분)는 공사중 비내력콘크리트벽체 또는 경량벽체로 변경될 수 있음.
- 현장여건 및 단열성능개선을 위한 일부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동의외벽마감(코어부포함)은 수성페인트마감이며 석재마감은 101동~105동은 구간별 4개 층 또는 5개 층 106동은 3개 층 107동 108동은 4개 층으로 시공예정이며 재료와 색상 및 디자인은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음.
- 타일의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발생이 생길 수 있음.
- 단위세대에 적용된 가구하드웨어는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제조사, 사양, 규격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바닥마감재는 견본주택과 폭과 색상이 상이할 수 있음.
- 세대분전반, 통신 단자함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옥상구조물의 경우 본 시공 시 높이 및 두께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난간의 위치 및 길이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위 세대전 타입침실1발코니로 나가는 분합창의 경우 본 시공 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 스마트홈 서비스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세대 내 설치된 기기의 상태 조회 및 제어가 가능하며,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 스마트홈(IoT) 호환이 되는 가전기기까지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세대 내 홈 네트워크 연동기기(조명, 가스밸브제어, 난방제어 등)외 스마트 가전제품(공기청정기, 에어컨 등)은 소비자가 별도로 구매해야 하며, 반드시 통신사 스마트홈과 호환되는 모델이어야 합니다.)

- 스마트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입주민이 반드시 세대 내 무선인터넷 (WiFi-AP)를 설치하여야 하고 (통신사무관), 아파트 단지 네트워크망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제어방식에 따라 일부 기기는 별도의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조건은 사용자와 통신사의 계약내용에 준하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홈 서비스 관련하여 추후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통신사의 사업정책에 따라 60일 전 예고 후 종료될 수 있으며, 세부 이용조건은 통신사의 계약 내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모델하우스와 영상의 서비스 및 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시 미 구현 또는 성능 개선 등 서비스 항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침실문뒤벽에 세대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이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위치는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 실 발코니비확장 및 선택형에 따라 조명기구의 사양, 설치위치, 설치방향 및 수량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내 조명기구는 실 시공시 견본주택과 위치 및 색온도등이 상이할 수 있음.
- 59타입 아일랜드식탁에 설치되는 매립형 콘센트는 아일랜드식탁이동시 사용할 수 없음.
- 본 공사시 침실, 욕실도어에 손끼임방지장치가 설치됨.
- 현관문 및 세대내 일부 도어가 손잡이로 인해 90도 개방이 어려울 수 있음.
- 현관디딤판, 걸레받이, 욕실뒷선반, 주방상판 등에 사용된 자재는 자재의 특성상 이음매가 노출되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색상 및 무늬가 다를 수 있음.
- 세대내부 타일나누기는 본 공사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견본주택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조명스위치, 대기전력차단스위치, 콘센트, 통신수구, 온도조절기, 환기컨트롤러, 환기디퓨져, 바닥드레인, 선홈통, 수전류 등의 제품사양, 위치, 개수는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의 월패드, 배선기구, 스위치, 조명기구,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등의 위치 및 제조사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환경/공용부/커뮤니티시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 주동의 위치 및 동, 층, 호수에 따라 코아 및 주출입구의 디자인, 마감재사양 및 평면, 단면, 창호형태등의 계획은 동별위치에 따라 서로 상이할 수 있고, 계획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자전거보관소가 각 동 필로티 및 외부에 배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소음, 분진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단지내 소방관련에어매트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식재 및 차폐시설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 프라이버시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 도로 및 지상주차장과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및 보행자에 의해 거주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지상주차장출입구 및 지상주차장과 인접한 저층세대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및 차량진입시 경광(사이렌)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지하/지상주차장 진입부로 인해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지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으로 차량진입시, 진입로가 1개차로이므로 방문객차량으로 인한 입주민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홀은 각 세대간에 공유하는 공유 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음.
- 엘리베이터홀은 채광창호의 설치유무 및 창호크기, 또는 창위치는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분양카달로그를 확인하여야 함.
- 엘리베이터홀, 계단실 창호의 규격, 설치위치는 실시 공시변경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등은 공사시 변경될 수 있으며(법적기준 내) 이로 인해 분양사업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지상주차장 등에 설치되는 트렌치는 일부 부위에서 물이 고일 수 있음.
- 지하/지상주차장바닥은 별도의 구배계획이 없으므로 일부 부위에 물이 고일 수 있음.
- 지하/지상추차장의 주차구획은 일반형(2.3mx5.0m), 특화(2.4mx5.0m), 확장형(2.5mx5.1m), 장애인(3.3mx5.0m), 경형(2.0mx3.6m)로 설치됩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의 냉방 실외기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의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상부주동 및 아파트 외부공간 인근에 실외기실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인근 세대에 소음 및 분진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업종에 따라 인접 동세대는 소음, 냄새, 분진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은 주거동의 주차로를 일부 공동으로 사용하며, 이를 구분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의 쓰레기분리수거함은 지하1층에 설치될 예정이며, 추후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이동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배치상 인접세대위치 및 창호설치에 따라 동간사생활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내 전기공급용개폐기(PADS/W)설치로 인하여 미관저해 및 조망권,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계약전 사업부지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혐오시설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시 홍보물,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집기는 실제 시공시 재질, 색상,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과정이나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관련시설은 입주시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제공 집기 및 마감재는 변동될 수 있음.
- 단지 내 상가는 별도의 분양시설이나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며 향후 비상상황 발생시 장애물의 설치로 인한 계약자의 피해에 대해 시행 및 시공 측은 일체의 책임이 없음.
- 추가 선택옵션품목은 입주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품목이며, 제조사 및 모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을 확인함.
- 태양광으로 발전되는 전기는 공용부전기로 사용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태양광설비의 위치, 각도, 방향, 수량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모형과 상이하게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구조물, 항공장애등, 야간 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엘리베이터 운행속도는 지하층을 포함한 총 층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105동 옥상에 TV 공청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 및 규모, 형태 등은 실시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 이동통신기간사업자안테나/중계설비가 101, 103, 105동 옥상 및 지하층에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 상태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치변경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단지내 전파상태에 따라 지상녹지구간, 지하주차장 등에 이동통신기간사업자안테나/중계설비가 추가설치 될 수 있음)(설치위치는 지역 전파관리소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이동통신 중계장치의 설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업무영역이며, 시공사와 관련이 없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전파방해, 난시청 등으로 인하여 TV 및 라디오, DMB방송 일부채널수신이 불량할 수 있음.

Ⅸ 기타 사항

■ **입주자 사전점검 안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7호
- 국토교통부 "입주자사전점검운영요령"에 따라 입주 개시전 약1~2개월 전에 특정일자를 통보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예정일** : 2023년05월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지정기간에는 연체료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입주시 단지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경비실, 주민운동시설(휘트니스센터1개소), 주차장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36조에 의거 적용됨.**

■ 본 모집공고 전 시행위탁자 및/또는 시공사 및/또는 분양대행사가 광고한 사항에 대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주)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계약자는 케이비부동산신탁(주)에 위 광고 내용을 주장할 수 없음.

■ **「주택법」제39조에 의거 인증서표기**

공동주택성능등급인증서	녹색건축예비인증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친환경주택성능수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1조제3항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이행여부

항목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가. 의무사항이행여부검토		
①고기밀창호	적용	외기직접면한창의 기밀성능은 KSF22921등급이상
②고효율기자재	적용	급수펌프(부스타펌프),고효율변압기 전동기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그 평균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사용
③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 및 대기전력전동차단콘센트(세대 내 거실, 침실, 주방 각 1개소)설치
④일괄소등스위치	적용	단위세대 현관에 설치(1EA)
⑤고효율조명기구	적용	단위세대, 공용부, 부속동산업통상자원부고시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 조명기기로 정의되는 제품을 세대 및 공용부위 내 사용
⑥공용화장실자동점멸스위치	적용	보육시설, 경로당,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화장실에 자동점멸 스위치 설치
⑦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단위세대내 각 실온도조절장치 설치
⑧절수설비	적용	수도법 제15조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내진성능및능력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확보여부와 내진능력공개에 의거 메르칼리진도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함.

구분	등급
내진능력	Ⅶ-0.1408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산정한 수정메르칼리진도등급(MMI등급, Ⅰ~Ⅶ)으로 표기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단위:원/부가가치세포함)

구분	건축	전기	소방 / 통신
회사명	㈜유원건축사사무소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주)	㈜대경기술단
감리금액	₩2,000,739,400(VAT포함)	₩601,384,000(VAT포함)	₩311,256,000(VAT포함)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동 등으로 인해 증가될 수 있음.

■본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92020-101-0008800호	146,565,160,000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포함)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제1조(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줌

제2조(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융통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 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 납부계좌(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 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 일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등과 공동관리하는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 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 샤시, 그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등으로부터 계약금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 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아파트 공사 진행 정보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사업장의 공사진행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4조(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부도・파산・사업포기등의사유가발생한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같음)보다 25퍼센트P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등으로 공사중단상태가 3개월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해당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사업장의 공동주택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각호의 사유로 사고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제2호에서 제4호의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사업주체및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수탁자	시공사	시행위탁자
상호명	케이비부동산신탁㈜	삼부토건(주)	삼부르네상스(주)
법인등록번호(고유번호)	110111-1348237 (120-81-67944)	110111-004163 (104-81-00771)	135711-0145146 (596-86-01450)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역삼동)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63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50, 에이동 4-0013호 (덕풍동, 현대지식산업센터 한강미사)

■ **견본주택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785-16

■ **홈페이지주소 : http://sambu-renaissance.co.kr**

■ **분양문의 : 1600-0377**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천안 신방 삼부르네상스 견본주택에 문의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에는 관련 법령이 우선합니다.)